

##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교재 추록 (이패스 소방사관학원 박이준)

- 2023. 4. 7.자 및 2023. 5. 9.자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8호, 2023. 4. 7. 일부개정]

### 1. 개정내용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제3호 중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을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직시키거나"를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를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수보직기간"을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권자"를 "임용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년 이내"를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③ 법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 제2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5년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해야 하며, 제2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2. 교재 내용 변경

### ○ 58쪽

- 5행 :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방법으로 해야 하며
- 7행 : 아니할 수 → 않을 수

### ○ 58쪽 Box

- 3행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 7행 :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과

### ○ 71쪽 : <(5)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다음으로 대체

#### (5)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21조).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74쪽 : <(2) 성적 반영>을 다음으로 대체

(2) 성적 반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

○ 74쪽 : <(2) 면직·면직제청>을 다음으로 대체

(2) 면직·면직제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제2항).

1.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74쪽 맨 끝에 다음을 추가

5. 임용심사위원회

(1) 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제22조의2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21조 제5호의 사유(*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li><li>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li><li>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li></ol> |
|---|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2)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영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제2항).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항).

④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제4항).

- |   |
|---|
|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br>2. 근무태도, 공직관<br>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
|---|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 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항).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제6항).

○ 101쪽 <(1) 필수보직기간>을 다음으로 대체

(1) 필수보직기간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1항 본문).

○ 101쪽 첫째 box의 3행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 102쪽 위쪽 표의 세 번째 칸 오른쪽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 5년 이내에 다른 직위

○ 102쪽 위쪽 표의 맨 아래칸 오른쪽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2호, 2023. 5. 9., 일부개정]

### 1. 개정내용

제15조 제3항 중 "자격증을 소지한"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를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아

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제5차시험"을 "제6차시험"으로 한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서류전형과"를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을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 중 "제46조 제4항 제1호"를 "제46조 제5항 제1호"로 한다.

제4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제46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제4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를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관계법규

- 가.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소방장·소방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분야"를 각각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2. 교재 내용 변경

- 57쪽 : <시험의 방법>
- 표에서 넷째 칸에 추가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
--------	----------------------------

- 면접시험 부분을 다음으로 대체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	-----------------------------

○ 57쪽

- 중간쯤 : 다음의 구분에 의한 → 다음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 특수성이나 기타의 사유로    니한다 → ~~않는다.~~

- 표를 다음으로 대체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차시험	체력시험
제4차시험	신체검사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58쪽 표에서 다음과 같이 밑줄 부분 수정

1. 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註: 퇴직공무원의 재임용,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이나 사법시험등에 합격한 자의 임용)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 가능
2. 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註: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에 상응 한 근무실적이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자, 외국어능통자, 경찰공무원, 의용소방 대원)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서류전형·체력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 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 가능

○ 59쪽 중간에 <소방관계법규> 소개부분을 다음으로 대체

2.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63쪽

- 아래에서 5행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 아래에서 2행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지원대상자인 사람

- 그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제5항).

○ 65쪽 3행 : 제46조 제4항 제1호 → 제46조 제5항 제1호

○ 65쪽 : <(3)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위에 다음을 추가

(3) 종합적성검사 결과 반영 (제46조 제3항)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 뒷부분 소제목 번호 순차적 변경

※ 뒷부분 조항 번호 변경 : 제3항→제4항, 제4항→제5항, 제5항→제6항, 제6항→제7항

○ 66쪽 맨 위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다음으로 대체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